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0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 김 윤 · 박민규 · 오세희

서미화 · 최민희 · 주철현

정혜경 • 전진숙 • 박홍배

위성곤 · 채현일 · 김용민

김우영 · 정진욱 · 이수진

서왕진 • 이재강 • 황명선

문금주 • 송재봉 • 황정아

문대림 · 강준현 · 전종덕

남인순ㆍ허 영ㆍ박희승

이기헌 • 정준호 의원

(2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

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학생의 정원) (생 략)	제32조(학생의 정원)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